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의무 부과 등〉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3289)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의무 부과	3
2. 현금 기부채납 허용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현정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8.

3. 회부연월일 : 2024. 8.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하여 특수학교는 제외되어 있고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 관련 기부채납의 범위를 현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도 교육부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공립 특수학교는 99개교로 전체 특수학교 194개교의 51%에 불과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학생 비중은 매년 줄었으나 일반학교 배치비율은 늘어나 특수학교 설립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 상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을 현물로 한정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어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 증·개축 등을 약속했다가 추후 사업비 증가 등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민원·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학교용지의 조성·공급 등에 관한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도 기부채납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학교 설립 등을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등).

Ⅲ. 검토의견

1.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의무 부과

개정안은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 등에 관한 특례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특수학교 설립 시에 필요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4조 및 제8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초등학교· <u>중학교 및 고등학교용</u>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u>증축</u> 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용</u> ----- ----- ----- ----- ----- <u>증축·개축 및 대수선을</u>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초등학교· <u>중학교 및 고등학교의</u>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3. (생략)	제2조(정의) ----- -----. 1. ----- ----- <u>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u> ----- ----- -----. 2.·3. (현행과 같음)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현행	개정안
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세대 규모 이상은 유치원·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u>고등학교는</u>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세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가. ~ 마. (생략) 2. (생략) ④ ~ ⑥ (생략) ⑧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유치원·초등학교·<u>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u>)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 1. ----- ----- ----- ----- ----- -----<u>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u>----- ----- ----- -----. 가. ~ 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⑧ ----- ----- ----- -----<u>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u>----- ----- ----- ----- -----.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은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일정 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의 조성·개발 또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 개발·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¹⁾,

이처럼 현행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함으로써 특수학교²⁾가 제외되어 있음.

특수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³⁾에 대하여 유치원, 초·중·고교의 전부

1)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①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2) 「유아교육법」 제15조(특수학교 등)

①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 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 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기본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로서, 2024년 총 19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 수는 30,027명으로 영아를 제외한 전체 특수교육대상자(115,140명)의 26.0%가 배치되어 있음.(참고자료)

「초·중등교육법」 제59조4)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5)에서는 일반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특수교육인 통합교육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나,

중증의 지체/시각/청각 또는 자폐,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일반학교에서의 교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특수학교 설립은 필요할 것임.

<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현황 >

(단위 : 교)

구 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합계	
국립	1	1	1	1	1	5	2.6%
공립	2	3	88	6	1	100	51.3%
사립	10	9	52	14	5	90	46.1%
합계	13	13	141	21	7	195	100.0%

자료 :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교육부, 2024. 9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일반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2014년 대비 2024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40.5%나 증가하였으나 특수학교는 17.5% 증가하는데 그쳤고, 2024년 4월 기준 편도 통학시간이 1시간이 넘는 학생 수가 2,630명(9.1%)에 이르고 있음.(참고자료)

< 2014년 대비 2024년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학교 수 현황 >

구분	2014년	2024년	증감(율)
특수교육대상자 수(명)	82,278	115,610	33,332(40.5%)
특수학교 수(개교)	166	195	29(17.5%)

자료: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추세에 따라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특수학교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특수학교 기피현상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 확보 및 설립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학교용지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원활한 특수학교 설립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 등에 관한 특례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할 경우 특수학교 설립 시에 필요한 학교용지가 용이하게 확보됨에 따라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현행 학교용지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2024년 전체 유·초·중·고 학생(5,682,016명) 대비 특수교육대상자(115,610명)는 2.0%⁶⁾로 특수학교 취학수요가 적고,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계에서 특수학교 취학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아니하므로,

특수학교의 확충 필요성이라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학교용지 활용의 효율성 제고 및 통합교육의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입법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수요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구체적인 기준없이 특수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경우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증가와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교육부, 2024. 9

2. 현금 기부채납 허용

개정안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도 기부채납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4조제7항 및 제5조제5항 제5호).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⁷⁾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u>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⑦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u> -----. 1. <u>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u> 2. <u>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u> ⑨ <u>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u>

현행	개정안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 ④ (생략)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⑤ ----- ----- -----, -----제3호 · 제4호 및 제5호-----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기부채납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고⁸⁾, 공유재산의 범위는 부동산과 그 종물 등으로 법률로 명시하고 있음⁹⁾.

7) 현행과 같거나, 특수학교 추가와 관련된 조문은 생략하고 현금 기부채납 관련 내용만 조문대비함

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①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개정안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 증·개축 등을 약속했다가 추후 사업비 증가 등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사례 등을 고려하여,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참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으로 간주하는 입법례도 있음¹⁰⁾.

다만, 원칙적으로 현금도 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기부채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의 원칙규정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현금 기부채납을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청됨.

교육부는 기부채납은 공유재산법상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업무편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 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제품 보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권

10) 제17조(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 ③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의 완화규정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람”에서도 현금은 공유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전의 투자를 기부
채납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5

[참고자료]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

(단위: 교, 학급, 명)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A)	'24(B)	B-A
특수교육대상자 수	87,278	88,067	87,950	89,353	90,780	92,958	95,420	98,154	103,695	109,703	115,610	5,907
학교 과정 별	장애영아	680	742	656	549	582	532	439	369	359	407	63
	유치원	4,219	4,744	5,186	5,437	5,630	5,989	6,536	7,197	8,248	8,781	-35
	초등학교	33,184	33,591	33,770	35,505	38,031	41,091	43,205	44,814	48,448	51,585	2,698
	중학교	22,159	21,108	19,793	19,218	18,788	18,462	19,140	20,212	21,462	23,005	2,008
	고등학교	22,973	23,422	23,943	23,655	22,584	21,502	20,655	20,169	19,867	20,725	1,315
	전공과	4,063	4,460	4,602	4,989	5,165	5,382	5,445	5,393	5,311	5,200	-142
특수학교 수	166	167	170	173	175	177	182	187	192	194	195	1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	9,617	9,868	10,065	10,325	10,676	11,105	11,661	12,042	12,712	13,287	13,931	644
교원 수*	17,922	18,339	18,772	19,327	20,039	20,773	22,145	23,494	24,962	25,599	27,084	1,485

* 국·공·사립,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자료: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교육부, 2024. 9.

< 2020~2024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현황 >

(단위: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		%		%		%		%
특수학교	26,299	27.7	27,027	27.6	27,979	27.0	28,942	26.5	30,027	26.1
특수학급	52,744	55.5	54,266	55.4	57,948	56.0	61,993	56.7	65,966	57.2
일반학급	16,061	16.9	16,600	17.0	17,514	16.9	18,474	16.9	19,254	16.7

계	95,104	100.0	97,893	100.0	103,441	100.0	109,409	100.0	115,247	100.0
---	--------	-------	--------	-------	---------	-------	---------	-------	---------	-------

자료: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교육부, 2024. 9. 재편집

< 특수학교 통학시간 >

(2024.4.1.기준)

시도	통학 소요시간별 학생 수(편도)						계
	30분 이내	1시간 이내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2시간 이상	1시간 이상 소계	1시간 이상 비율	
합계	15,286	11,037	2,618	12	2,630	9.1%	28,953
서울	2,771	1,323	197	7	204	4.7%	4,298
부산	1,198	756	50	-	50	2.5%	2,004
대구	955	770	241	-	241	12.3%	1,966
인천	1,043	793	40	-	40	2.1%	1,876
광주	665	535	35	-	35	2.8%	1,235
대전	674	314	78	1	79	7.4%	1,067
울산	356	272	95	-	95	13.1%	723
세종	186	73	-	-	0	0.0%	259
경기	2,816	2,063	565	-	565	10.4%	5,444
강원	625	240	35	-	35	3.9%	900
충북	660	536	188	-	188	13.6%	1,384
충남	497	623	265	-	265	19.1%	1,385
전북	535	519	117	-	117	10.0%	1,171
전남	620	426	150	4	154	12.8%	1,200
경북	408	776	352	-	352	22.9%	1,536
경남	1,079	726	122	-	122	6.3%	1,927
제주	198	292	88	-	88	15.2%	578

자료: 「특수교육통계」 2024. 7.

< 특수학교 과밀학급 현황 >

(2024.4.1.기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3 특수학교	15.3	13.7	0.6	4.3	0.4	5.1	7.9	-	3.4	2.0	5.2	-	0.9	10.9	2.8	0.5	1.0	5.5
'23 특수학교 학급	9.9	20.7	4.5	31.7	6.9	17.2	-	1.3	12.7	14.6	14.9	6.9	1.0	2.1	9.8	6.7	43.8	11.6
'24 특수학교	8.9	12.2	0.9	1.7	1.9	6.6	0.7	3.6	3.3	3.0	2.3	0.0	3.1	8.7	0.4	0.2	8.0	4.1
'24 특수학교 학급	12.9	14.9	3.3	23.0	4.3	13.3	0.0	8.8	16.1	15.9	10.3	5.1	2.7	4.9	9.6	8.5	41.6	12.1
증감 특수학교	△6.4	△1.5	0.3	△2.6	1.5	1.5	△7.2	3.6	△0.1	1	△2.9	0	2.2	△2.2	△2.4	△0.3	7	△14
증감 특수학교 학급	3	△5.8	△1.2	△8.7	△2.6	△3.9	0	7.5	3.4	1.3	△4.6	△1.8	1.7	2.8	△0.2	1.8	△2.2	0.5

자료: 「교육부」